

|          |      |  |
|----------|------|--|
| 의안<br>번호 | 2457 | <b>[울산광역시 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b><br><b>심사보고서</b> |
|----------|------|--|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8. 22(금) 문희성 의원 외 6명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8. 22.(금)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9. 8.(월)

## 2. 제안설명 요지(문희성 의원)

### 가. 제안이유

-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 제2조)
- 적용대상,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제4조)
- 기본계획 수립, 지원 사업,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제7조)
- 플랫폼 종사자 지원 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기능,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제10조)

### 다.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28조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명주)

- 플랫폼 종사자 지원에 관한 사무' 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에 해당되어 조례 제정은 가능함.

또한, 노동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최근 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확산으로 인해 고용 형태가 점차 비정형적이고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고, 특히 배달노동자는 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산재 보험, 휴식 공간, 노동조건 보장 등에서 기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현재 울산광역시 중구에는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 확보, 권익 보호,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책 제도화가 필요한 상황임.
- 집행부에서는 관련 상위 법령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다양한 유형과 직종을 가진 플랫폼 종사자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시행으로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 전반적으로 제반 규정을 검토한 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